

## 난민 지원 변호사를 위한 매뉴얼 사용법

한국은 1992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제6장)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난민들을 보호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한국은 2001년 난민인정을 하기 시작 이후 2010년 10월 4일 현재까지 난민인정을 신청한 2,764명 가운데 216명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131명에 대해서는 인도적체류허가(난민협약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지만 출신국 내 인권상황을 고려하여 출신국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체류를 허가)를 하였다. 하지만 그 정도의 난민보호 가지고는 한국의 경제력과 인구수에 걸 맞는 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인정신청단계에서나 난민소송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리 변호사들도 한국에서 난민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협회는 난민들에게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지원변호사단과 난민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하였는데, 이 매뉴얼은 위 외국인지원변호사단과 난민지원변호사단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이 난민사건과 관련해 초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한국이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보호해야 할 난민은 난민협약 제1조 A(2)의 난민정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어떠한 사람이 위 난민정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제1장 난민협약상 난민요건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 UN난민기구의 study module 2권의 연습문제를 제1장 후반부에 실었으므로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UN난민기구의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제7장) 제28항에도 나와 있는바와 같이 난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는 난민협약상 난민요건을 충족하면 난민인정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난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난민협약국이 구체적인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누가 난민인지 확인하고 선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한국은 법무부에서 난민인정절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누가 난민을 신청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부터 난민인정불허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 까지 12개의 난민인정절차와 관련된 주요 질문들을 제2장 난민인정절차에서 다루었다. 이제까지 변호사들이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단계에서 난민신청자들을 대리하였지만, 앞으로는 법무부의 난민인정절차 단계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 질 것이다. 각 난민인정절차에서 필요한 부록-난민 관련 서식들은 본 매뉴얼 맨 마지막 첨부하였다.

법무부의 난민인정절차이든 법원의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이든 기본적으로 난민신청자가 난민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챙기지 못하고 맨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난민의 특수성, 잘못 판단할 때 직면하는 결과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난민요건의 입증정도는 상당히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UN난민기구의 입장이고 대부분의 선진국 난민 판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장 난민신청에 있어 입증기준과 입증책임에 관한 문서에서는 이러한 UN난민기구의 입장과 각국 판례의 입장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난민요건을 입증하는데 있어서는 난민신청자의 진술의 일관성(이러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변호사들은 법무부의 난민인정신청 단계부터 참여할 필요가 높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2장 난민인정절차를 보라)과 난민신청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 사이의 부합성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난민신청자의 출신국의 상황을 충실히 검색하여 그 관련 내용을 법무부나 법원에 현출해야 하므로, 출신국가정보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검색 방법에 대해서는 제4장 출신국가정보에서 다루었다.

난민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각 난민요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판례에 대해서는 제5장 난민판례해설에서 설명하였다. 이 장에서는 특히 난민요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자세히 살펴 보았고, 난민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기각판결을 내리는 판례를 분석하였으므로, 준비서면을 작성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의 한국어 번역본을 영어본과 함께 실었다.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의 정본은 영어본과 불어본 뿐이다. 따라서 한국어 번역본은 정본이 아니기 때문에 난민협약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영어원문을 참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위 난민협약의 한국어 번역본은 몇 가지 치명적인 오역이 있다. 제12조의 personal status는 ‘개인적 지위’라고 번역하기 보다 ‘친족법 내지 신분법적인 지위’라고 번역되어야 하며, 제31조 제1호의 ‘형벌’은 ‘(행정벌을 포함하는 제재 일반이라는 의미에서 ‘벌’)’이라고 번역되어야 한다. 난민협약은 제1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난민(난민신청자를 포함하여 난민협약상 난민요건을 충족하는 자)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조에서 난민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1조 가운데에서도 제1조 A (2) 만이 난민적격요건이다. 위 난민협약 제1조 B는 난민협약의 시간적, 장소적 한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이러한 한계는 한국이 역시 체결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서 제거 되었다), 제1조 C는 난민정지사유에 대해서, F는 난민배제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UN난민기구에서 펴낸 제7장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은 soft law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은 아니지만 난민요건과 난민인정절차에 대해 중요한 문서로 취급을 받고 있다. 따라서 위 편람 역시 영어본과 함께 실었고, 중대한 오역에 대해서 언급하면, 제167항의 ‘탈영이나 징병기피를 한 자는 난민지위에서 배제되나’는 ‘탈영이나 징병기피를 한 자는 난민지위에서 배제되지 않으며’라고 반대로 번역이 되어야 하고, 제199항의 “신청인이 행한 진실과 다른 진술’은 ‘사실과 다른 신청인의 진술’이라고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본 난민 지원 변호사를 위한 매뉴얼을 편집하다 보니 조금 더 실제적이고 충실한 내용을 담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 이 매뉴얼이 한국에 찾아온 난민들이 최소한 난민협약이 보장하는 정도의 권리라도 누리고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본 매뉴얼을 사용하다가 궁금하거나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집자(김종철 변호사, 1999clf@gmail.com)에게 연락을 주면 추후 보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